

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19. 3. 20.(수) 총 3매(본문2)	
담당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유용일, 주무관 이진용 • ☎ (044) 201-4089, 3333
보 도 일 시		2019년 3월 2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0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 → 62개로 대폭 확대

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·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(2.22)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(목) 공포·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, 3.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.

* 다만, LH·SH 등 공공기관은 3.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□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(A3-4A BL)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.

<위례 신도시(하남) '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>

지구명	블럭명	단지명	사업주체	시공사	건설호수(호)
위례신도시 (경기 하남)	A3-4A BL	힐스테이트 북위례	코리아신탁	현대엔지니어링	1078
	A3-4B BL	우미린	산해건설	우미개발	875
	A3-10 BL	중흥S클래스	새솔건설	중흥토건	475
	A3-2 BL	우미린	우미토건	우미개발	420

*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- 아울러, 한국토지주택공사·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,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시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<'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>

지구명	블럭명	택지공급 시기	구분	면적(㎡)	건설호수(호)
하남감일	B9 BL	'19.1	60-85㎡	43,339	866
	A7 BL	'19.8	60㎡ 이하	19,129	340
서울 고덕강일	1 BL	'19.2	60~85㎡	33,898	555
			85㎡ 초과	14,536	238
	5 BL	'19.2	60~85㎡	33,803	567
			85㎡ 초과	14,427	242
과천시식정보타운	S9 BL	'19.4	60㎡ 이하	27,500	647
화성비봉	B3 BL	'19.7	60-85㎡	48,285	917
시흥장현	A8 BL	'19.7.	60㎡ 이하	18,316	378
	A12 BL	'19.7.	60㎡ 이하	13,475	278
고양삼송	A24 BL	'19.8	60-85㎡	37,510	619
고양지축	A1 BL	'19.8	60이하	32,485	750
	B5 BL	'19.11	60-85㎡	20,778	343
의정부고산	S6 BL	'19.9	60㎡ 이하	38,319	606
완주삼봉	B3 BL	'19.9	60-85㎡	36,851	666
양산사송	A1 BL	'19.10	60㎡ 이하	63,359	1,188
창원가포	B2 BL	'19.11	60-85㎡	38,519	660

*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-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유용일 사무관(☎ 044-201-4089), 이진용 주무관(☎ 044-201-33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개정 전	
구분	12개 항목
택지비 (3)	택지공급가격, 기간이자, 그 밖의 비용
공사비 (5)	토목
	건축
	기계설비
	그 밖의 공종
	그 밖의 공사비
간접비 (3)	설계비, 감리비, 부대비
그 밖의 비용 (1)	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

개정 이후	
구분	62개 항목
택지비 (4)	택지공급가격, 기간이자, 필요적 경비, 그 밖의 비용
공사비 (51)	토목 (13) 토공사, 흙막이공사, 비탈면보호공사, 옹벽공사, 석축공사, 우수(雨水)·오수(汚水)공사, 공동구 공사,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, 도로포장공사,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, 정화조시설공사, 조경공사, 부대시설공사
	건축 (23) 공통가설공사, 가시설물공사, 지정 및 기초공사, 철골공사, 철근콘크리트 공사, 용접공사, 조적공사, 미장공사, 단열공사, 방수·방습공사, 목공사, 가구공사, 금속공사, 지붕 및 홈통공사, 창호공사, 유리공사, 타일공사, 돌공사, 도장공사, 도배공사, 수장(修粧)공사, 주방용구공사, 그 밖의 건축공사
	기계설비 (9) 급수설비공사, 급탕설비공사, 오수·배수설비공사, 위생기구설비공사, 난방설비공사, 가스설비공사, 자동제어설비공사, 특수설비공사, 공조설비공사
	그 밖의 공종 (4) 전기설비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설비공사, 승강기공사
	그 밖의 공사비 (2) 일반관리비, 이윤
간접비 (6)	설계비, 감리비, 일반분양시설 경비, 분담금 및 부담금, 보상비, 기타 사업비성 경비
그 밖의 비용 (1)	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